

2022년 하반기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

「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‘2022년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’의 융자지원 사업자 모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19일

산림청장

1. 융자사업 개요

가. 사업명 : 2022년 하반기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지원

* 지원대상 :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, 임산물가공시설, 해외조림지 매수

나. 목적 : 해외산림자원의 장기·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투자 지원

다. 예산 : 4,439백만원

라. 지원조건 : (금리) 연리 1.5%, (지원율) 70~100%

(융자기간) 2~25년 거치 3년 균등상환

2. 사업대상자

- 「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 제2조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(이하 “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”라 함)

3. 지원자격 및 요건

- 가. 해외에서 당해 연도 조림, 조림지 육림, 임산물 가공시설, 또는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
- 나. 해외산림자원개발 진출국의 투자 승인 등이 완료되어 용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
- 다. 「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 제33조에 따라 비상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

4. 지원대상 및 형태

사 업 명		금리	지원율(%)		용자한도	용자기간(년) (거치/상환)	비고
			용자	자부담			
산업 및 탄소 배출권 조림	속성수 (열대지역)	1.5	100	-	소요액	7/3	육림포함
	속성수 (기타지역)	1.5	100	-	소요액	10/3	육림포함
	장기수 (열대지역)	1.5	100	-	소요액	17/3	육림포함
	장기수 (기타지역)	1.5	100	-	소요액	25/3	육림포함
	고무나무	1.5	70	30	사업비의 70% 이내	7/3	육림포함
	바이오매스 조림(SRC)	1.5	100	-	소요액	2/3	육림포함
임산물가공시설		1.5	70	30	사업비의 70% 이내	2/3	-
해외조림지 매수		1.5	70	30	사업비의 70% 이내	10/3	-

주1) 육림사업 용자기간은 당초 용자 지원된 조림사업의 용자기간 이내로 적용

주2) 바이오매스조림(SRC) 거치기간은 수종별 벌기령(2~5년) 적용

* SRC(Short Rotation Coppice) : 단벌기 맹아갱신

주3) 임산물가공시설 : 목재 또는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시설, 국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임산물(밤, 대추, 감 등)과 경합하지 않는 가공시설

* 경합 여부는 국내 임산물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자금융자심의회에서 결정

주4) 해외조림지 매수 : 산업.탄소배출권 조림지 및 조림대상지, 국내기업이 확보한 조림지 공동투자 또는 지분의 일부 매입 포함

5. 사용용도 및 범위

가. 조 립

- 조림예정지정리, 묘목구입(또는 양묘비용), 식재, 비료구입 및 시비, 임도시설, 기계장비 비용(구매·임차 포함) 및 인건비, 당해 연도 풀베기와 조림구획 측량 및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

나. 육 립

- 보식, 풀베기, 가지치기, 간벌, 병해충 방제, 임도보수, 기계장비 비용(구매·임차 포함) 및 인건비,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

다. 임산물가공시설

- 부지조성, 기계설비 구입·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, 기시설된 가공공장 매수*
- * 공증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대출금을 담보하는 국내담보와 함께 제출 시 선지원하고, 1년 이내에 대상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유권 확인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함(융자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미제출 시 정책자금 회수)

라. 해외조림지 매수

- 산업·탄소배출권 조림지 및 조림대상지를 매입하는 비용
- 국내기업이 확보한 조림지 공동투자 또는 지분의 일부를 매입하는 비용
- * 조림지 매수를 위한 공증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대출금을 담보하는 국내담보와 함께 제출 시 선지원하고, 1년 이내에 대상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유권 확인서 및 조림 관련 기관의 조림사업지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(융자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미제출 시 정책자금 회수)

6. 융자사업자 의무

가. 개발자원의 반입

-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지원받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국내 목재자원의 수급 위기 시 산림청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지 수확량에

상당한 일정 물량을 국내로 반입해야 함

* 관련법령 : 「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

나. 융자금 수령 및 집행

- 아래의 경우 익년도 상반기 융자 신청이 제한(2년 이내 2회 누적시 3년간 융자신청 제한) 되며, 수령한 산림사업종합자금은 3개월 이내에 융자금의 해외 송금을 완료해야 함.
 - ①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지원 결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대출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
 - ② 담보부적합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(50% 미만 대출도 포함)
 - ③ 임산물가공시설, 해외조림지 매수 사전지원 후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증빙자료 미제출로 융자금을 회수할 경우
- 단, 환율의 급등 등 사업비 집행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타당성 여부에 따라 해외송금 기간의 연장 가능하다.

다. 실적제출

-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지원받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반기별로 **사업실적***과 융자금 집행상황(외환송금내역 및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등)을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산림청에 실적보고서 제출
- *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당해 연도 기추진된 사업실적 및 전(前) 연도 사업계획을 초과하는 사업실적은 당해 연도 사업실적으로 인정
- * 조림 실시 기간이 다음연도 3월까지 이어지는 경우 당해 연도 사업으로 인정

7. 융자지원 방법

가. 사업비의 100% 사전대출

-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중 속성수와 장기수 사업, 바이오매스(SRC)조림

나. 자부담 집행 후 잔액* 사전대출

-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립 중 고무나무, 임산물가공시설(매수포함), 해외조림지 매수
- * 기 지출한 자부담액이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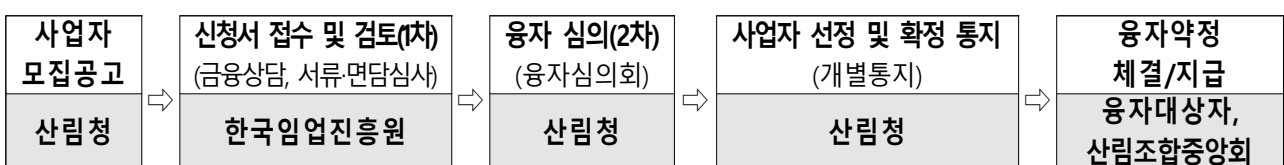
8. 용자 신청 접수기간 및 방법

- 가. 접수기간 : 2022. 9. 19(월). ~ 10. 21(금).
- 나. 신청서류 :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용자(대출) 신청서(첨부서류 포함)
- 다. 신청서와 작성 요령 등은 별지 서식 및 산림청(www.forest.go.kr)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(ofiis.kofpi.or.kr) 참조
- 라. 접수처 :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 해외사업실
-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(우편번호 07570)
 - 전화번호 : 02-6393-2703
- 마. 접수방법 : 우편 또는 방문
-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일 마지막 날인 '22. 10. 21(금) 18:00(한국시간) 까지 도착분에 한함

9. 용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 등

- 가. 용자대상자 결정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**용자심의회** 심의를 거쳐 결정
- 제출된 신청 서류 검토시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가 현지 확인 또는 사업계획 설명을 위한 면담을 실시할 수 있음

나. 선정절차



* 지원액 결정 금액이 소액인 경우 기업의 수용 여부(용자신청 철회) 확인

다. 한국임업진흥원은 신청서 접수 및 검토(1차) 단계에서 사업신청 서류요건을 갖춘 사업(신청)자의 담보권 검토(약식감정)를 산림조합중앙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, 산림조합중앙회는 이를 검토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통보

라. 우선 선정 요인

- 지원 사업 중 해외산림자원 선점 효과가 큰 신규조림과 조림지 육림사업을 우선*하여 지원

* 우선순위 : 속성수·장기수 조림 > 바이오매스조림 > 고무나무 조림 > 임산물 가공시설 > 해외조림지 매수

- 인도네시아, 캄보디아, 미얀마 등 국가간 산림협력에 따라 확보한 조림대상지에 대한 산림자원개발사업자 우선 지원

- 수급조절,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(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)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

-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가치*를 고려한 자체 사업(융자금 사용 불가) 포함시 우선 지원

*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제3조(사회서비스의 종류)에 해당하는 서비스

* 사회적 가치 실행계획에 대한 주민 등과의 협약서를 증빙으로 첨부

마. 융자 대상자 확정 통지는 사업신청자별로 개별 통보

바. 융자금 지급방법 : 담보(국내 담보 물건에 한함) 취득 후 일괄 지급

- 국내 담보물 취득이 원칙이며, 담보의 종류는 융자업무 대행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(상호금융여신부)의 여신규정 등에 의한 담보설정 및 취득 비율에 따름

- 담보관련 문의 :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(02-3434-7237)

10. 기타사항

- 가. 공고 이외의 사항은 산림청 ‘2022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’과 산림조합중앙회의 ‘여신규정’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름
- 나. 융자사업은 정부예산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·담보대출을 장기·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며, 대출기관의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금액이 결정됨
- 다. 융자신청자는 융자심사와 관련한 자료 요청, 현지 확인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
 -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지 확인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융자 대상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
- 라. 조림사업의 경우 개소별(지번 또는 사업계획서상 임·소반)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, 기 지원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 할 수 없음
 - 단, 지원 결정된 동일 조림사업장 내 추가 사업비 또는 지원 사업에 대한 부족액(인정가능 대상에 한함)에 대해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 구역 도면 등 추가소요액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를 첨부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
- 마. 융자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액 조정으로 당해 연도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
- 바. 융자대상자 결정 후 융자대상자의 담보제공 등 대출절차에 따라 융자금이 지원되므로 융자대상자 선정과 동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님
- 사. 융자목적 이외의 활용 융자금은 회수 조치되며,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「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

아. 산림청은 정부간 합의에 의하여 투자대상 국가에 설치된 산림협력 센터로 하여금 용자사업에 따른 지도점검을 위임할 수 있으며, 사업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

자. 신용조사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경비는 신청자 부담임

차. 제출서류는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편철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

카. 구비서류 중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를 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타. 심의결과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

[별지 서식]

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(대출)신청서									
신청자	1. 상 호		(전화번호 :)						
	2. 대 표 자								
	3. 주 소								
	4.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여부		☐ 여 ☐ 부		5. 신고수리일		년 월 일		
	6. 사업책임자(담당자)		이름 :		직위 :		전화 :		
사업개요	7. 사업명칭			8. 사업량(면적, 수량)					
	9. 사업 대상국 (세부지역)								
	10. 현지법인(대표자)								
	11. 투자방법			☐ 단독 ☐ 합작		12. 참여지분비율		%	
	13. 계약(합작)상대자								
	14. 계약체결일					15. 계약기간		(년)	
자금소요	16. 전기간 총 사업비								
	17. 신청년도 총 사업비								
	18. 신청인 부담액								
	19. 융자신청금액								
	20. 담보종류		☐ 지급보증서 ☐ 이행/지급보험증권 ☐ 부동산 ☐ 상장유가증권 ☐ 정기예금 ☐ 기타()						
	21. 대상 사업 관련 정부 지원 여부		본 신청인(기업)은 융자 신청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조·융자, 기타 다른 자금 지원 등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. ☐ 여 ☐ 부						
「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,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.									
2022년 월 일 신청인 상호 : 대표자 : (서명 또는 인) 산림청장 귀하									
첨부서류	1.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 2. 사업계획서(50쪽 이내) 및 요약서(5쪽 이내) : 경제성 및 기술평가자료, 소요자금 산출내역 포함 3. 관련계약서(당해 연도 사업대상지 조립사업허가서, 도급계약서,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등) 4.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포함)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발급 후 3개월 이내 분) 5. 기업신용평가서(한국기업평가, 한국신용정보, 한국신용평가, 한국기업데이터에서 평가한 것에 한함) 6. 담보확보 관련증빙(가능한 경우) 7. 당해 연도 조립사업 대상지 도면 및 공간정보(경위도 좌표) ※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 후 원문 서류와 함께 제출								
	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								
신청인 상호 : 대표자 : (서명 또는 인)									